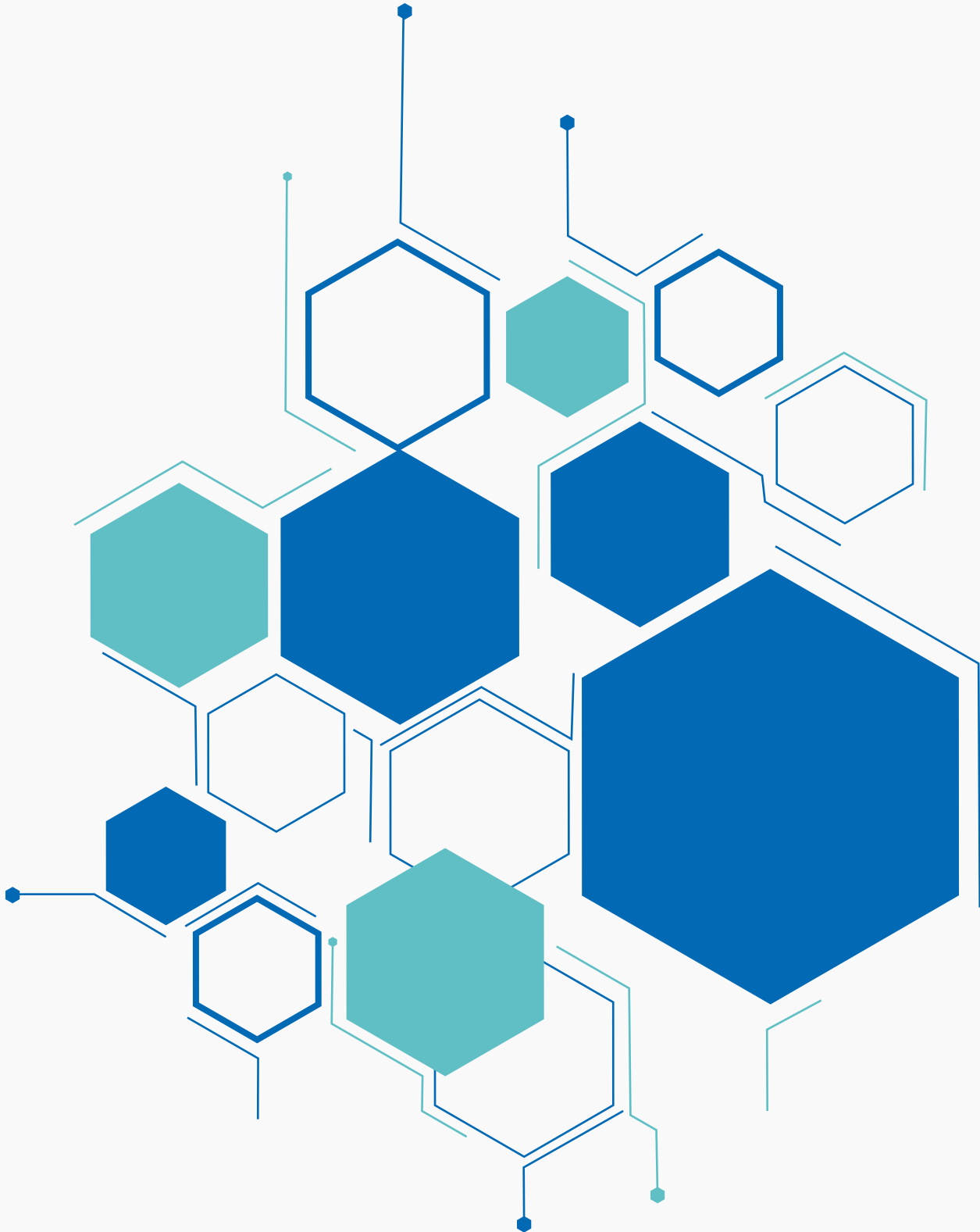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용 학습자료

과목별핵심학습자료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소화설비
	<p>소화설비</p> <p>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등이 있고,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에는 주거용·상업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고, 옥내소화전설비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하며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고, 밀폐구조 사업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등이 있고 그 밖에 옥외소화전설비가 있습니다.</p>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경보설비
	<p>경보설비</p> <p>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비상벨설비, 자동사이렌설비 등 비상경보설비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P형 1급 수신기라고도 불리며, 모든 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그 밖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등이 있습니다.</p>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p>피난구조설비</p>
	<p>피난구조설비</p> <p>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등이 있고, 4층 이하 사업장의 비상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과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 있습니다. •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있으며, 피난유도선은 사업장 내부에 복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고, 유도등, 유도표지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모든 사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구비해야 합니다. • 비상구 -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구의 위치는 출입구로부터 사업장 긴 변 길이의 이분의 일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 또는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이분의 일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비상구의 설치
	<p>비상구의 설치</p> <p>비상구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구의 위치는 출입구로부터 사업장 긴 변 길이의 이분의 일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 또는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이분의 일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로 설치하고, 문의 열림방향은 피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 문의 재질은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이어야 하고, 추락방지 안전조치로 120cm 이상 난간 또는 안전로프를 두줄로 설치하며, 추락위험 경고표지 또는 경보음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p>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소화기의 사용방법
	<p>소화기의 사용방법</p> <p>먼저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이때, 소화기를 화점에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며,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잡아당깁니다. 절대 손잡이를 쥐고 안전핀을 뽑아서는 안 되며,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하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하게 소화가 될 때까지 화점을 향하여 약재를 골고루 방사합니다.</p>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소화기의 주요 점검사항
	<p>소화기의 주요 점검사항</p> <p>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하고,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에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며, 압력계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월 1회 흔들어 주어야 하고, 가압식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있으므로 폐기 후 축압식소화기로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p>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유도등의 주요 점검사항
	<p>유도등의 주요 점검사항</p> <p>점등상태 확인의 경우, 항시 점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비전원 자동전환의 확인은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렀을 때, 예비전원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하며 외관 및 배선상태 확인은 유도등 외관 파손여부 확인 및 노출배선이 금속가공 전선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p>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p>피난 및 방화시설의 주요 점검사항</p>
	<p>피난 및 방화시설의 주요 점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문 _ 방화문 설치 장소에 다른 문으로 교체는 없었는지 점검하고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지 점검하며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지 점검하고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방화셔터 _ 방화셔터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점검하고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장애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복도 및 계단 _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타용도로 겸용하여 사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며 기타 피난이나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기타 비상구 또는 비상문 _ 상시 개방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기타 피난계단, 내부마감, 방화구획 등 건축법상 피난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훈련과목	소방안전 관리와 화재예방
학습자료	<p>피난 · 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사례</p>
	<p>피난 · 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경우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용접, 조적, 쇠파이프,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을 막는 경우 • 기타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입니다.